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12p 11~17줄	개념,공식-설명	<p>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: <b>외국통화 및 여행자수표의 매매</b></p> <p>지역단위 농협 및 수협의 해외송금업무: 각각 농협은행 및 수협중앙회의 업무위탁을 받아 건당 <b>3천불</b> 이하, 연간 합산 미화 5만불 이내의 송금</p> <p>증권사, 카드사 해외송금업무 : 건당 미화 <b>3천불</b> 지급 및 수령 동일인당 각각 미화 <b>3만불</b>의 연간지급 및 수령</p> <p>[추가] 직전분기말 총자산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 : 건당 미화 5천불, 동일인당 연간누계액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지급 및 수령</p> <p>우체국 : 외국인거주자의 국내보수 해외송금</p>	<p>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: <b>해외직불카드의 발행</b></p> <p>지역단위 농협 및 수협의 해외송금업무: 각각 농협은행 및 수협중앙회의 업무위탁을 받아 건당 <b>5천불</b> 이하, 연간 합산 미화 5만불 이내의 송금</p> <p>증권사, 카드사 해외송금업무 : 건당 미화 <b>5천불</b> 지급 및 수령 동일인당 각각 미화 <b>5만불</b>의 연간지급 및 수령</p> <p>[추가] <b>직전분기말 총자산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 : 건당 미화 5천불, 동일인당 연간누계액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지급 및 수령</b></p> <p><b>우체국 : 외국인거주자의 국내보수 해외송금</b></p>
21p 6줄	개념,공식-설명	<p>* 외국환은행의장은 건당 미화 <b>3천불</b>을 초과하는 지급등에</p>	<p>* 외국환은행의장은 건당 미화 <b>5천불</b>을 초과하는 지급등에</p>
30p 16줄	문제-본문	<p>㉔ 위 제②항 내지 제④항에도 불구하고 환전영업자는 동일자·동일인 기준 <b>미화 2천불</b> 이하의 외국통화등을 외국환매각신청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 없이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.</p>	<p>㉔ 위 제②항 내지 제④항에도 불구하고 환전영업자는 동일자·동일인 기준 <b>미화 2천불(단, 환전장부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환전영업자는 미화 4천불)</b> 이하의 외국통화 등을 외국환매각신청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 없이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.</p>
30p 23줄	개념,공식-설명	<p>㉕ 무인환전기환전영업자는 동일자·동일인 기준 미화 <b>1천불</b>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통화등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.</p>	<p>㉕ 무인환전기환전영업자는 동일자·동일인 기준 미화 <b>2천불</b>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통화등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.</p>
32p 8~14줄	개념,공식-설명	<p>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<b>3천불</b>을 초과하는 지급</p> <p>① 건당 미화 <b>3천불</b>을 초과하는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(지급등의 증빙서류)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미화 <b>5천불</b>을 초과하는 지급</p> <p>① 건당 미화 <b>5천불</b>을 초과하는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(지급등의 증빙서류)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33p 14~18줄	개념, 공식-설명	<p>* 미화 5만불 상당액 초과 시에는 지급확인서(사유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)와 증빙서류(납세증명서, 거주자의 실체를 확인할 서류 등 포함)를 제출해야 하며 미화 5만불 한도란, 건당 <b>3천불</b> 초과 거래를 모두 합산한 연간 총지급누계액임</p> <p>* 건당 <b>3천불</b> 초과 송금의 연간누계가 1만불을 초과 시에는 국세청에 통보되며, 건당 3천불 초과거래는 모두 관세청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됨</p> <p>* 건당 미화 <b>3천달러</b> 상당액 이하의 해외송금은 연간 송금액 한도(미화 5만달러)에서도 차감되지 않는다.</p>	<p>* 미화 5만불 상당액 초과 시에는 지급확인서(사유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)와 증빙서류(납세증명서, 거주자의 실체를 확인할 서류 등 포함)를 제출해야 하며 미화 5만불 한도란, 건당 미화 <b>5천불</b> 초과 거래를 모두 합산한 연간 총지급누계액임</p> <p>* 건당 미화 <b>5천불</b> 초과 송금의 연간누계가 1만불을 초과 시에는 국세청에 통보되며, 건당 3천불 초과거래는 모두 관세청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됨</p> <p>* 건당 미화 <b>5천불</b> 상당액 이하의 해외송금은 연간 송금액 한도(미화 5만달러)에서도 차감되지 않는다.</p>
35p 6줄	개념, 공식-설명	<p>③ 비거주자와 외국인거주자는 제①항 및 제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1. 매각실적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미화 1만불 이내 매각</p> <p>2. 외국인거주자의 미화 1만불 이내의 해외여행경비 지급</p> <p>* 매각실적이 전혀 없어도 미화 1만불까지는 환전이 가능함</p>	<p>③ 비거주자와 외국인거주자는 제①항 및 제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1. 매각실적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미화 1만불 이내 매각</p> <p>2. 외국인거주자의 미화 1만불 이내의 해외여행경비 지급</p> <p>* 매각실적이 전혀 없어도 미화 1만불까지는 환전이 가능함</p> <p>[추가]</p> <p><b>3. 외국인거주자가 1항 3호에 해당하는 자금의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체신관서를 통하여 지급(우체국을 통한 해외송금 가능)</b></p>
37p 10줄	개념, 공식-설명	<p>①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휴대수출 할 수 있다.</p>	<p>①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휴대수출 할 수 있다. <b>(단, 이주자가 이주기간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소명한 후 대외송금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).</b></p>
40p 19줄	개념, 공식-설명	<p>상 계</p> <p>대외결제를 위해 금전의 대외송금 또는 수령에 의하지 않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채권과 채무를 장부상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. 이러한 경우, 예외거래를 제외하고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 <b>신고 대상이다</b>. 상계를 실시한 자는 관계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.</p>	<p>상 계</p> <p>대외결제를 위해 금전의 대외송금 또는 수령에 의하지 않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채권과 채무를 장부상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. 이러한 경우, 예외거래를 제외하고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 <b>신고 또는 사후보고 대상이다</b>. 상계를 실시한 자는 관계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.</p>
41p 4줄	개념, 공식-설명	<p>1. 일방의 금액(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)이 미화 <b>3천불</b> 이하인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</p>	<p>1. 일방의 금액(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)이 미화 <b>5천불</b> 이하인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</p>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42p 4~9줄	문제-본문	<p>② 제①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수출입, 용역거래, 자본거래등 대외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하는 등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<b>신고하여야 한다.</b></p> <p>③ 제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하여 상계하거나,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, 한국은행총재에게 <b>신고하여야 한다.</b></p> <p>④ 제②항 또는 제③항의 <b>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</b>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은 동 신고내용을 다음 반기 첫째 달 말일까지 국제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	<p>② 제①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수출입, 용역거래, 자본거래등 대외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하는 등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<b>신고하거나, 상계처리 후 30일 이내에 사후보고 하여야 한다.</b></p> <p>③ 제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하여 상계하거나,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, 한국은행총재에게 <b>신고하여야 한다(다만, 거래당사자가 아닌 다국적회사의 자금관리 전문회사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보고 가능).</b></p> <p>④ 제②항 또는 제③항의 <b>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사후보고를 받은</b>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은 동 신고내용을 다음 반기 첫째 달 말일까지 국제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
45p 8~23줄	개념,공식-설명	<p>1. 미화 <b>3천불</b> 이하의 금액을 제3자 지급등을 하는 경우(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)</p> <p>② 제①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미화 <b>3천불</b>을 초과하고 미화 1만불 이내의 금액(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)을 제3자와 지급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	<p>1. 미화 <b>5천불</b> 이하의 금액을 제3자 지급등을 하는 경우(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)</p> <p>② 제①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미화 <b>5천불</b>을 초과하고 미화 1만불 이내의 금액(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)을 제3자와 지급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53p 2~7줄	개념,공식-설명	<p>7. 이 장에 의한 자본거래로서 거래 건당 지급등의 금액(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)이 미화 <b>3천불</b> 이내인 경우</p> <p>8. 이 장에 의한 자본거래로서 거주자(외국인거주자를 제외)의 거래 건당 지급금액이 미화 <b>3천불</b> 초과 5만불 이내이고, 연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. 다만,지급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거래의 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.</p> <p>9. 이 장에 의한 자본거래로서 거주자의 거래 건당 수령금액이 미화 <b>3천불</b> 초과 5만불 이내이고, 연간 수령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. 다만,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거래내용을 확인받아야 하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령하여야 한다.</p>	<p>7. 이 장에 의한 자본거래로서 거래 건당 지급등의 금액(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)이 미화 <b>5천불</b> 이내인 경우</p> <p>8. 이 장에 의한 자본거래로서 거주자(외국인거주자를 제외)의 거래 건당 지급금액이 미화 <b>5천불</b> 초과 5만불 이내이고, 연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. 다만,지급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거래의 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.</p> <p>9. 이 장에 의한 자본거래로서 거주자의 거래 건당 수령금액이 미화 <b>5천불</b> 초과 5만불 이내이고, 연간 수령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. 다만,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거래내용을 확인받아야 하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령하여야 한다.</p>
62p 2~6줄	개념,공식-설명	<p>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</p> <p>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(동일인 기준 10억원 이하 등 제외)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이 항에 의한 신고사항 중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하는 경우 및 10억원을 초과하는 원화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b>한국은행총재는 제①항에</b> 의한 신고 중 법인이 아닌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동 신고내용을 매월별로 익월 20일까지 국제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	<p>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[추가]</p> <p><b>①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해 상환기간 1년미만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지정외국환거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b></p> <p><b>②</b>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(동일인 기준 10억원 이하 등 제외)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이 항에 의한 신고사항 중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하는 경우 및 10억원을 초과하는 원화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<b>③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과 한국은행총재는 제①항과 ②항에</b> 의한 신고 중 법인이 아닌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동 신고내용을 매월별로 익월 20일까지 국제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
64p 5줄	개념,공식-설명	<p>• 거주자 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동일자에 미화 <b>3천불</b> 이내에서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는 거래</p>	<p>• 거주자 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동일자에 미화 <b>5천불</b> 이내에서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는 거래</p>
79p 21줄	개념,공식-설명	<p>① 거주자(해외이주 수속 중이거나 영주권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)가 해외직접투자(증액투자 포함)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 이익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하는 <b>경우로서 거주자가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</b>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, 누적 투자금액이 미화 50만불 이내에서의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금의 지급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보고 할 수 있다.</p>	<p>① 거주자(해외이주 수속 중이거나 영주권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)가 해외직접투자(증액투자 포함)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 이익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하는 <b>경우</b>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, 누적 투자금액이 미화 50만불 이내에서의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금의 지급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보고 할 수 있다.</p>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82p 20줄	개념,공식-설명	⑤ 제①항에 규정한 보고서 중 연간사업실적보고서와 청산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현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(현지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결산서 또는 현지세무사의 세무보고서로 같음할 수 있다)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	⑤ 제①항에 규정한 보고서 중 연간사업실적보고서와 청산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현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(현지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결산서 또는 현지세무사의 세무보고서로 같음할 수 있다)를 함께 <b>제출해야 한다. 단, 누적투자금액이 미화 10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b>
90p 22줄	개념,공식-설명	③ 제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외국부동산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이전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내신고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취득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( <b>최대 미화 20만불로 한한다</b> )에서 외국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.	③ 제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외국부동산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이전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내신고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취득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( <b>계약금 송금액 한도 없음</b> )에서 외국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.
96p 5줄	개념,공식-설명	2. 개인별 및 법인별 여행자가카드의 결제(미화 <b>3천불</b> 초과)실적(월별)	2. 개인별 및 법인별 여행자가카드의 결제(미화 <b>5천불</b> 초과)실적(월별)
100p 20줄	개념,공식-설명	외국환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증빙서류의 징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들면, • 건당 미화 <b>3천불</b> 상당액 이하의 거래	외국환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증빙서류의 징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들면, • 건당 미화 <b>5천불</b> 상당액 이하의 거래
101p 16~21줄	문제-본문	외국환은행은, 건당 미화 <b>3천불</b> 초과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이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및 신고 예외사항의 영수금액이 수령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,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 금융감독원에 통보되는 거래는, • 건당 미화 <b>3천불</b> 초과 증빙서류미제출 송금 및 해외예금 송금액이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	외국환은행은, 건당 미화 <b>5천불</b> 초과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이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및 신고 예외사항의 영수금액이 수령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,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 금융감독원에 통보되는 거래는, • 건당 미화 <b>3천불</b> 초과 증빙서류미제출 송금 및 해외예금 송금액이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
106p 번호 : 9	문제-본문	~거주자가 미화 <b>3천불</b> 을 초과하고 미화 1만불 이내의 금액을 제3자와 지급등을 하려는 경우에는~	~거주자가 미화 <b>5천불</b> 을 초과하고 미화 1만불 이내의 금액을 제3자와 지급등을 하려는 경우에는~
110p 번호 : 31	문제-본문	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<b>3천불</b> 을 초과하는	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<b>5천불</b> 을 초과하는
111p 번호 : 34	문제-본문	연간누계 미화 5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확인서(사유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)와 증빙서류(납세증명서, 거주자의 실체를 확인할 서류 등)을 징구해야 하며, 미화 5만불 한도 산정 시 건당 미화 <b>3천불</b> 이하 거래는 모두 제외된다.	연간누계 미화 5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확인서(사유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)와 증빙서류(납세증명서, 거주자의 실체를 확인할 서류 등)을 징구해야 하며, 미화 5만불 한도 산정 시 건당 미화 <b>5천불</b> 이하 거래는 모두 제외된다.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112p 번호 : 40	문제-보기(지문)	<p>① 미화 5만불 상당액 초과 시에는 지급확인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미화 5만불 한도란 건당 <b>3천불</b> 초과 거래를 모두 합산한 연간 총지급누계액이다.</p> <p>② 건당 미화 <b>3천달러</b> 상당액 이하의 해외송금은 연간 송금액 한도(미화 5만달러)에서 차감되지 않는다.</p>	<p>① 미화 5만불 상당액 초과 시에는 지급확인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미화 5만불 한도란 건당 <b>5천불</b> 초과 거래를 모두 합산한 연간 총지급누계액이다.</p> <p>② 건당 미화 <b>5천불</b> 상당액 이하의 해외송금은 연간 송금액 한도(미화 5만달러)에서 차감되지 않는다.</p>
114p 번호 : 47	문제-보기(지문)	<p>② 건당 미화 <b>3천불</b> 초과하는 증빙서류미제출 송금의 연간누계액이 미화 1만불 초과</p>	<p>② 건당 미화 <b>5천불</b> 초과하는 증빙서류미제출 송금의 연간누계액이 미화 1만불 초과</p>
119p 번호 : 71	문제-본문	<p>거주자가 외국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,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지급할 수 있지만, 부동산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이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( )를 받은 경우에는 취득예정금액의 ( )% 이내에서 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b>이 경우, 최대 지급가능금액은 미화 ( )불이며, 내신고수리를 받은 날로부터 ( )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신고수리를 받거나 지급한 자금을 국내로 회수해야 한다.</b></p>	<p>거주자가 외국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,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지급할 수 있지만, 부동산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이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( )를 받은 경우에는 취득예정금액의 ( )% 이내에서 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b>이 경우, 내신고수리를 받은 날로부터 ( )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신고수리를 받거나 지급한 자금을 국내로 회수해야 한다.</b></p>
125p 번호 : 71	정답	내신고수리, 10, <b>20만, 3</b>	<b>내신고수리, 10, 3</b>
147p 17~19줄	개념,공식-설명	<p>고객현금거래 보고제도(CTR ; 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) : 동일자 동일인 명의로 <b>2천만원</b> 이상</p> <p>고객주의(확인) 의무(CDD ; Customer Due Diligence) : 미화 1만불 이상(<b>원화는 2천만원</b>)을</p>	<p>고객현금거래 보고제도(CTR ; 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) : 동일자 동일인 명의로 <b>1천만원</b> 이상~</p> <p>고객주의(확인) 의무(CDD ; Customer Due Diligence) : 미화 1만불 이상(<b>원화는 1,500만원</b>)을~</p>
148p 1줄	문제-본문	<p><b>3천불</b> 이하의 소액송금이나 용역대가 및 수입대금 송금 등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없이 가능하다(실무적으로, 연간지급 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 이하인 경우는 송금신청서와 외국환은행 지정 신청서를 같은 양식에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음).</p>	<p><b>5천불</b> 이하의 소액송금이나 용역대가 및 수입대금 송금 등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없이 가능하다(실무적으로, 연간지급 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 이하인 경우는 송금신청서와 외국환은행 지정 신청서를 같은 양식에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음).</p>
153p 3~13줄	개념,공식-설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당 <b>3천불</b> 초과 지급등으로서 지급인 및 수령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</li> <li>• 건당 <b>미화 3천불</b> 초과 증빙서류미제출 송금 및 신고예외사항 수령</li> <li>• 건당 <b>미화 3천불</b> 초과 증빙서류미제출 송금 및 해외예금 송금액이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당 미화 <b>5천불</b> 초과 지급등으로서 지급인 및 수령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</li> <li>• 건당 미화 <b>5천불</b> 초과 증빙서류미제출 송금 및 신고예외사항 수령</li> <li>• 건당 미화 <b>5천불</b> 초과 증빙서류미제출 송금 및 해외예금 송금액이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 하는 경우</li> </ul>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199p 9줄	개념,공식-설명	외화송금 등의 단발성 거래의 경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성 등을 예방하기 위해,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가져왔다든가 불법자금거래를 하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정보분석원 앞으로 각각 고액현금거래 보고 및 의심거래 보고를 해야 한다. 거래금액이 <b>2천만원</b> 상당액 이상인데도 모두 현금으로 거래하면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이고, 불법자금 거래로 의심할만한 주관적 근거가 있으면 의심거래보고 대상이다.	외화송금 등의 단발성 거래의 경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성 등을 예방하기 위해,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가져왔다든가 불법자금거래를 하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정보분석원 앞으로 각각 고액현금거래 보고 및 의심거래 보고를 해야 한다. 거래금액이 <b>1천만원</b> 상당액 이상인데도 모두 현금으로 거래하면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이고, 불법자금 거래로 의심할만한 주관적 근거가 있으면 의심거래보고 대상이다.
206p 번호 : 11	문제-본문	미화 <b>3천불</b> 이하 환전의 경우와 같은 소액거래 시 생략되는 절차가 아닌 것은?	미화 <b>5천불</b> 이하 환전의 경우와 같은 소액거래 시 생략되는 절차가 아닌 것은?
208p 번호 : 21	문제-본문	고객주의(확인) 의무(CDD)는 미화 ( ) 이상( <b>원화는 2천만원</b> )을	고객주의(확인) 의무(CDD)는 미화 ( ) 이상( <b>원화는 1,500만원</b> )을
336p 번호 : 14	문제-보기(지문)	② 건당 미화 <b>3천달러</b> 초과 증빙서류미제출 송금	② 건당 미화 <b>5천달러</b> 초과 증빙서류미제출 송금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 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